

제25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
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6년 2 월 27 일

여 수 시 장

김기영



여수시 조례 제2280호

붙임 여수시 공유재산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여수시 조례 제2280호

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4호제3호 중 “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”을 “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 한다.

제34조제2항 중 “100만원”을 “50만원”으로, “6회”를 “12회”로 한다.

제37호제1항제5호 중 “국가보훈처장”을 “국가보훈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58조제1항1호 중 “100만원”을 “50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8조(대부료의 요율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「<u>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</u>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·운영자가 대부하는 경우</p> <p>4. ~ 8. (생략)</p> <p>⑤ (생략)</p> <p>제34조(대부료 등의 납부기한) ① (생략)</p> <p>② 영 제14조제8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<u>100만원</u>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<u>6회</u>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28조(대부료의 요율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---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「<u>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</u>」 ----- ----- ----- --</p> <p>4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4조(대부료 등의 납부기한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50만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12회</u> ----- --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제37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

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 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~ 4. (생략)
- 5. 시가 건립한 아파트, 연립주택,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

6. (생략)

②·③ (생략)

제58조(변상금의 분할납부) ① 영

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100만원 초과: 1년 4회 이내 분할 납부

2.·3. (생략)

②·③ (생략)

제37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

① 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-----
----- 국
가보훈부장관-----

6.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58조(변상금의 분할납부) ① --

-----.

1. 50만원 -----

2.·3.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